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lliancebernstein.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1년 8월 1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8월 20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강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 조성 관련	:	
<p>※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 추이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기준과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IV. 요약 재무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인 “얼라이언스번스틴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는 공동투자펀드(FCP) 형태로 설립되어 룩셈부르크 2002년 법에 따라 투자자총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탁회사(Management Company)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결정을 따르며, 통상 중요한 의사결정(예를 들어, 투자목적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변경, 보수의 인상 등)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동 기간 동안 환매수수료나 전환수수료의 추가 부담 없이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거나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에서 편입된 채무증권들의 추정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분배금을 매월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는 바,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종료일은 매년 6월 30일이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분배금을 지급받는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협회 코드: 9767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5882	A5881

2. 모집예정기간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펀드로 별도의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조좌)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6. 집합투자업자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 II.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주1)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2)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이언스번스틴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총수익뿐 아니라 높은 이자소득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환위험관리 전략

①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이하 “피투자 펀드”)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피투자 펀드는 미국 발행인들 및 신흥시장에 소재한 발행인들을 포함한 전세계 발행인들의 고수익(High Yield) 채무증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총자산의 최소 2/3이상을 투자합니다. 투자자산을 선정함에 있어 3가지 종류의 투자자산에 그 자산을 분산 투자합니다: (i) 미국기업발행인의 투자부적격등급 고수익 채무증권, (ii) 신흥시장 국가에 소재한 발행인들의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iii) 신흥 국가가 발행한 국가채무증서. 이외에도, 운용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종류 투자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펀드가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은 다양한 통화 및 다국적 통화 단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 펀드는 동일 국가에 총자산의 2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동제한은 미국발행인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투자 펀드는 스왑, 옵션, 선물 및 통화거래를 비롯한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금리 및 통화의 변동을 헷지할 것입니다. 단, 피투자 펀드가 활용하는 레버리지는 포트폴리오 총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투자는 특별한 고려사항을 수반합니다.

피투자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및 미국외 기업 발행인의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는 채권, 채무증서, 어음(bills/notes)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채무증권은 투자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환권이나 워런트와 같은 주식의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신용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②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헤지비율은 80%~100%수준입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비교 지수 : 33%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Constrained(원화 헤지)/ 33% JP Morgan GBI-EM/ 33% JP Morgan EMBI Global(원화 헤지)

3. 수익구조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해외 채권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로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4. 주요 투자위험

가.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투자위험 요약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위험	투자신탁이 소규모 시장을 가진 비유동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 자산 가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p>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가치, 기준 금리 또는 지수에 의하여 또는 이와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와 같은 숙련된 운용사가 신중하게 활용할 경우, 파생상품은 투자신탁의 운용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특정 위험을 경감하며,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특정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지만,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p>
채무증권 위험	<p>투자신탁의 채무증권 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 및 통화 환율 변동에 따라, 그리고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변동합니다. 투자신탁은 고수익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가치하락 및 자본손실 실현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이하의 신용등급을 지니거나,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은 높은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보다 수익률과 시가 측면에서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p> <p>투자신탁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는 투자적격등급 미만 또는 평가등급이 없으나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급을 가지는 고수익, 고위험 채무증권에 투자합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으로 평가되는 채무증권은 “정크본드(junk bond)”라 하며, 보다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원리금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여기며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 능력에 대하여 상당히 투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증권으로서 이는 경제조건 악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증권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시기에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더 높은 시장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낮은 등급의 증권은 투자적격등급 보다 실제 또는 인지되는 불리한 경제적·경쟁적 산업 조건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낮은 등급 증권의 시장은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도 보다 작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증권이 판매될 수 있는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의 낮은 등급의 증권에 대하여 어떠한 일반 유통시장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동 증권과 포트폴리오 재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분석에 따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낮은 등급의 증권에 대한 불리한 평판과 투자자 인식은 낮은 등급의 증권의 시가와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증권에 대한 거래비용은 높을 수 있으며 몇몇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증권의 경우보다 정보가 적을 수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일반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와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발행회사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인플레이션율, 자본재투자, 자기자원 총분성 및 수지균형 면에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내부자거래 규정, 시장조작 금지, 의결권대리행사 요건 및 적시 정보 공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로 발행회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회계 및 감사 기준이 중요한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국유화, 강제 수용, 압류 조세, 통화 붕괴, 정치적 격변, 정부 규제, 정치, 경제적 불안정, 외교상황 변화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나 동 국가에서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 국유화나 기타 압류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투자자산의 전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성, 파산, 도산 등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상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신흥시장	투자신탁은 선진시장에 소재한 발행회사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변동성 및 현저하게 낮은 유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발행회사 유가증권에의 투자는 선진시장 발행회사 유가증권에의 투자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중 투자신탁의 경우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는 바,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종료일은 매년 6월 30일이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분배금을 지급받는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세금 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하이일드 채무증권에 주로 분산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투자위험 5등급 중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하이일드 채무증권 투자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선호도를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자들은 본 투자신탁에의 투자적합성에 관하여 독립 재정 자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1. 6. 30.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경력
			기타 운용 중인 펀드	기타 운용 중인 자산	
박경림	1966	전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5개	약 13,484억원	- Societe Genera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LTD., 아시아 현지 주식 펀드매니저, 2005.8. - 2008.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2001.7. - 2005.7. - 현대투자신탁운용(주), 1999.7. - 2001.7.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신규 설정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바,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기간	최근 1년차 (2010.12.09~2011.06.30)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전체	4.46				
비교지수*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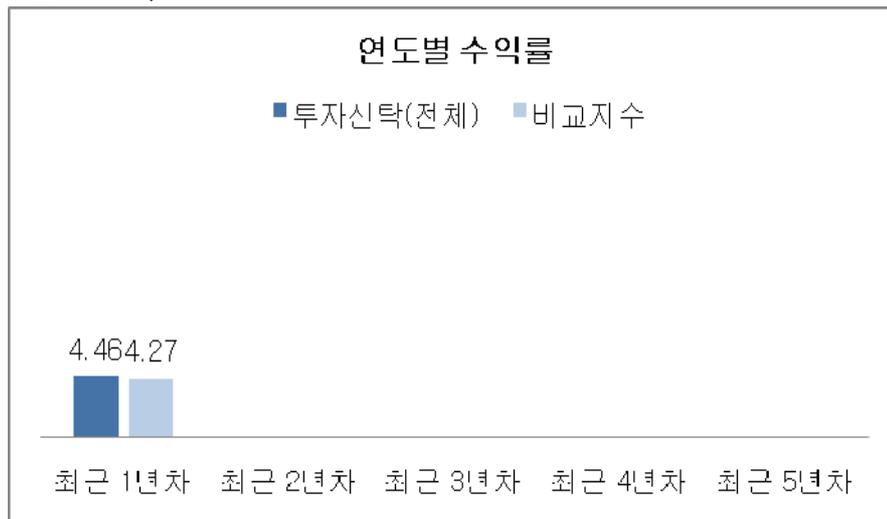
\* 비교지수: 33%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Constrained (원화 헤지)/ 33% JP Morgan GBI-EM/ 33% JP Morgan EMBI Global(원화 헤지)

\*\* 최근 1년차 수익률은 2010.12.9~2011.6.30 기간 동안의 수익률임.

주1)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



###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법 제 76 조제 4 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비 고 (지급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내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순자산총액기준)

구 분		지급비율 (연 %)		비 고 (지급시기)
종 류		A	I	
보 수	집합투자업자 보수	0.10%	0.1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5%	0.03%	
	신탁업자 보수	0.04%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8%	0.028%	
소 계		0.718%	0.198%	
기타비용		0.029%	0.029%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비율		0.747%	0.227%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 (피투자 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437%	0.917%	
증권거래비용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 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에서 부과하는 총 보수·비용은 약 연0.69% (피투자 펀드 운용보수 연 0.65% 포함)입니다. 피투자펀드의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피투자펀드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비용 및 피투자펀드의 비용의 추정치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구 분		1년 경과	3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5	335	512	1,03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44	553	894	1,907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	71	125	2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92	289	506	1,153

\* 종류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00%로 가정하여 산정함.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수익증권	가입 자격 제한 없음
종류 I 수익증권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

**2.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집합투자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분배금**

**(1) 분배금 지급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가.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1개월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채무증권들의 추정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신규 발행일 익월 20일),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2) 분배금의 지급연기**

①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1)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2.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② 분배금의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을 재개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분배금을 지급한다.

**다.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므로, 상기 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인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종료일은 매년 6월 30일이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분배금을 지급받는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제1기:2011년 6월 30일현재

(단위:원)

과 목		제1(당)기 (2010.11.3~2011.6.30)
		금액
I.	운용 자산	314,859,740,757
1.	현유 금 및 예치금	(15,174,412,206)
2.	유가증권	(299,685,328,551)
II.	기타 자산	15,651,933,753
		<u>330,511,674,510</u>
I.	기타 부채	18,629,880,297
		<u>18,629,880,297</u>
I.	원자본	311,881,794,213
		<u>311,881,794,213</u>
		<u>330,511,674,510</u>
I.	운용 수익	2,809,135,191
1.	투자 수익	(130,694,150)
2.	매매 이익	(13,894,391,484)
3.	매매 손실	(11,215,950,443)
II.	운용 비용	578,353,110
1.	운용매수료	76,996,213
2.	판매수수료	423,479,176
3.	수탁수수료	30,798,484
4.	사무수탁수수료	21,558,938
5.	기타비용	25,520,299
		<u>2,230,782,081</u>